

기관 안내서



노인요양시설



세종해밀요양원

“어르신들의 행복을 위한 또 하나의 가족”

청결하고, 안전한 요양원으로서 어르신들에게 최상의 서비스 제공

주소: 세종시 금남면 성덕영곡길 150)

TEL 044-866-8660/ Fax 044-865-8100/ Mobile 010-9295-8660/

Blog: https://blog.naver.com/haemil_8660/ modoo: <https://haemil044.modoo.at/>

기관을 방문해주신 여러분께 인사드립니다.



푸른 자연속에 위치한 **세종해밀요양원**은 초고령화 사회에 치매, 뇌혈관질환등으로 어르신 본인이나 가족의 심적, 경제적 그리고 육체적 부담을 함께 하고자 개원하게 되었습니다. 어르신의 건강을 위해 각방마다 온돌을 갖추었으며 생활거실을 통유리창으로 **탁트인 수려한 금강 조망**을 즐기실 수있고 **200평 규모의 쉼터**를 운영중입니다. 어르신들에게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많은 분들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배우는 자세로 생활하는 어르신과 보호자 직원이 하나가 되어 함께 **동행**하는 요양원이 되기 위하여 항상 노력하겠습니다

대표 현근성

목차

제 1장 운영규정의 개요

제 2장 종사자 근무체계

제 3장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제 4장 비급여 대상 및 항목별 비용

제 5장 시설의 규모 설비

제 6장 배상책임보험 가입여부 및 기관의 특성

제 7장 우수사례

제 1장 운영규정 개요

1. 입소 정원 (관련근거 운영규정 제 5부 1장 1조)

가. 정원 49명

- 1) 세종해밀요양원”(이하“시설”이라 칭한다)은 장기요양지정기관으로 지정된 장기요양보험 대상자 중 기초생활수급자, 노인성 질환, 기타 일상생활의 요양보호사의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장기요양등급 1,2,3,4,5등급 중 시설급여가 있는 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며, 입소 정원은 신고필증에 인허가 된 인원 입소 정원(49명) 내에서 입소 전 전화 상담 및 시설 방문 상담 등을 통하여 시설 입소 내역을 안내하고 시설 입소에 관련된 서류를 접수하여 접수된 순서에 따라 입소 승인 절차를 통해 시설과 입소인 및 신원인수인의 계약에 의해 입소한다. 단, 입소자의 장기입원 등으로 외박자가 발생한 경우, 외박기간이 10일을 초과한 때부터 외박자를 대신하여 다른 수급자(특례입소자)를 입소시킬 수 있다. 다만, 외박자의 복귀로 인해 일시적으로 정원이 초과된 경우에는 특례입소자의 입소일로부터 90일이 되는 날 또는 입소계약 만료일 중 먼저 도래하는 날까지는 정원을 초과하여 운영할 수 있다.

나. 입소 계약에 관한 사항 (관련근거 운영규정 제 5부 제 2장 제 2조~4조)

- 1) 입소 이용자 : 장기요양인정 판정 1~5등급자 중 시설급여로 판정 받은 자.
- 2) 계약기간 : 입소계약은 계약체결일로부터 ① 등급자는 장기요양 수급자의 인정상 유효기간까지이며, ② 등의자는 보호자와 정한기간까지이며, 제6조, 제7조 및 제8조, 제10조에 의한 계약 변경이나 해제가 없는 한 계약의 종료 시까지 존속하는 것으로 한다.
- 3) 계약의 해제 : 시설은 입소인이 다음의 각 호에 해당할 때 또는 입소자가 입소규칙 및 시설 운영에 피해를 주거나 민,형사상의 문제를 야기할 시에는 계약기간 중이라도 계약자(보호자)와 상담을 통해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 가) 입주계약상의 허위 사항을 기재하거나 기타 부정한 수단에 의해 입소하였을 때
- 나) 월 입소비 또는 기타 입소인이 시설에게 납부하는 비용 등을 3개월 이상 체납했을 때
- 다) 월 입소비 등의 납부를 자주 지연하는 것에 따라 그 납부 능력이 없고 또한 이 지연이 이 계약에 있어서 시설과 입소인 사이의 신뢰관계를 심하게 해치는 것이라고 시설이 인정했을 때
- 라) 시설의 승인을 얻지 않고 제21조 각 호에 규정하는 행위를 했을 때
- 마) 제4조 각 호에 규정하는 통지를 지연했을 때
- 바) 제23조, 제24조 또는 제25조의 규정을 위반했을 때
- 사) 장기 부재로 인해 이 계약을 계속할 의지가 없다고 시설이 인정했을 때

- 4) 계약의 종료: 이 계약은 다음 사유에 의해 종료된다.

- 가) 입소인이 사망했을 때
- 나) 시설 또는 입소인이 계약을 해지 했을 때

다. 필요시 의료이용 절차안내 (관련근거 운영규정 제5부 제 8장 제 17조)

- 1) 의료서비스 처리절차 의료를 필요로 하는 경우 처리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가) 간호(조무)사의 활동사항
 - 나) 간호(조무)사는 매일 입소어르신의 건강상태를 점검하고 건강관리기록부를 작성하여 보관한다.
 - 다) 입소어르신의 건강상태에 따라 복용약물, 체중, 혈압, 체온, 혈당 등 입소자의 건강관리에 필요한 정보를 기

록하여 방문의사가 입소자의 건강상태를 평가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라) 간호(조무)사는 입소자의 건강관리를 위해 의사의 조치사항을 수행하도록 한다.

마) 간호(조무)사는 입소자 상태변화 및 응급상황이 발생하였을 경우 상황에 따라 협약의료기관의 의사와 상담을 실시하여 조치사항을 수행하도록 한다.

2) 병원진료에 관한 사항

가) 입소자의 상태변화 및 응급상황이 발생하였거나, 그 밖에 병원진료가 필요하다고 판단 될 경우 가족 또는 보호자와 상담하여 병원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협조한다.

나) 입소자의 생명이 위급한 상태라고 판단된 때에는 협약병원, 입소자(보호자)가 지정한 병원 또는 관련 의료기관으로 즉시 후송하고 보호자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다) 보호자는 위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받았을 때에는 신속하게 대처하여야 한다. 다만 대처가 어려울 경우에는 우선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라) 입소자가 사망하였을 경우에 시설은 즉시 병원으로 후송하고 보호자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단 보호자와 사전에 협약이 있을 경우, 시설이 장례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3) 정기 병원진료 시 처리절차

가) 병원진료 수일 전에 가족 또는 보호자에게 정기진료에 관해 미리 알려 정상적인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한다.

나) 병원진료를 위한 가족 또는 보호자의 내원 상담을 실시한다.

다) 병원진료에 필요한 입소자의 근황과 진료에 필요한 각 종 관찰기록을 가족 또는 보호자에게 제공하여 정기진료 시 진료의사가 어르신 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협조한다.

4) 응급상황에 따른 병원진료 의뢰 시 처리절차

가) 응급상황 발생 시 가족 및 보호자에게 연락을 취함과 동시에 협약병원 및 119구급대에 연락하여 신속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

나) 병원진료에 따른 후송 시 부득이 가족이나 보호자가 동행할 수 없을 경우 시설 종사자가 병원까지 동행할 수 있으며, 가족이나 보호자가 병원에 도착하면 입소자를 인계한 후 귀원한다.

5) 외래병원 또는 의원 방문 진료 시 처리절차

가) 입소자의 병원진료(정기, 수시) 시 가족이나 보호자가 함께 동행하여야 함을 원칙으로 한다.

나) 가벼운 질병 등(내과, 이비인후과 등)으로 외래병원이나 의원을 방문하여 진료가 필요한 경우 원칙적으로 가족이나 보호자가 동행하여야 하나 부득이 동행할 수 없을 때에는 보호자에게 의료기관 방문에 관한 통보 및 동의를 득한 후 시설 직원이 동행하여 보호자의 역할을 대신할 수 있다. 단, 발생하는 진료비는 전액 가족이나 보호자가 부담한다.

다) 병원진료를 위한 이동 시 개인적 필요에 의하여 병원 등을 이용할 경우 이동에 따른 차량이용료는 본인 또는 가족이 별도로 부담한다.

6) 전원조치에 대한 사항

7) 질환의 증상 악화로 인해 전문적인 의료서비스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시설장은 본인 또는 가족과 협의하여 전원조치 할 수 있다.

8) 기타 사유로 본인이나 가족이 전원을 원할 경우 시설장과 협의하여 전원 할 수 있다.

라. 시설물 사용 상 주의사항

1) 입소계약서 제11조 (시설물 배상)

가) ‘갑’은 ‘을’의 시설물에 대하여 그 본래의 용도로 사용해야 하며, ‘갑’에 의한 시설물의 파손 또는 멸실에 대하여는 ‘갑’ 또는 ‘병’이 원상회복 하여야 한다.

나) ‘갑’ 또는 ‘병’이 원상회복을 할 수 없을 때에는 ‘을’은 시설물의 잔존가치 등을 고려하여 실비로 산출한

비용을 그 내역과 함께 문서로 제시하고 ‘갑’ 또는 ‘병’은 이에 대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2) 운영규정 제5부 제 10장 제 26조 ~28조 (서비스 제공자의 배상책임 및 면책범위에 관한 사항)

가) 26조【서비스제공자의 배상책임】

(1) 다음에 해당될 때 회사는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배상책임을 갖는다.

(가) 수급자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나) 수급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폭행, 성희롱 등의 행위.

(다)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수급자를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 및 치료를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

(라) 시설 종사자의 고의나 과실로 인하여 입소자를 부상케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

(마) 시설장비 또는 시설관리가 부실하여 입소자를 부상케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

(바) 학대(노인복지법 제1조의2 제4호의 노인학대 및 같은 법 제39조의9의 금지행위를 말한다)로 인하여 입소자의 건강상태가 악화되거나, 사망에 이르게 되었을 때

나) 제27조【면책범위】

(1) 면책범위와 관련하여 배상책임은 고의성이 아닌 업무 중 발생한 사고의 경우 시설이 가입한 영업배상책임 보험 및 전문직업인배상책임보험을 통하여 보상하며, 그 이후의 일들 각 호에 대해서 책임 및 배상을 물을 수 없다.

(가) 시설 내에서 자연 사망하였을 때

(나) 시설이 선량한 주의의무를 다했음에도 입소자가 임의로 외출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하였을 때

(다) 입소자가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하였을 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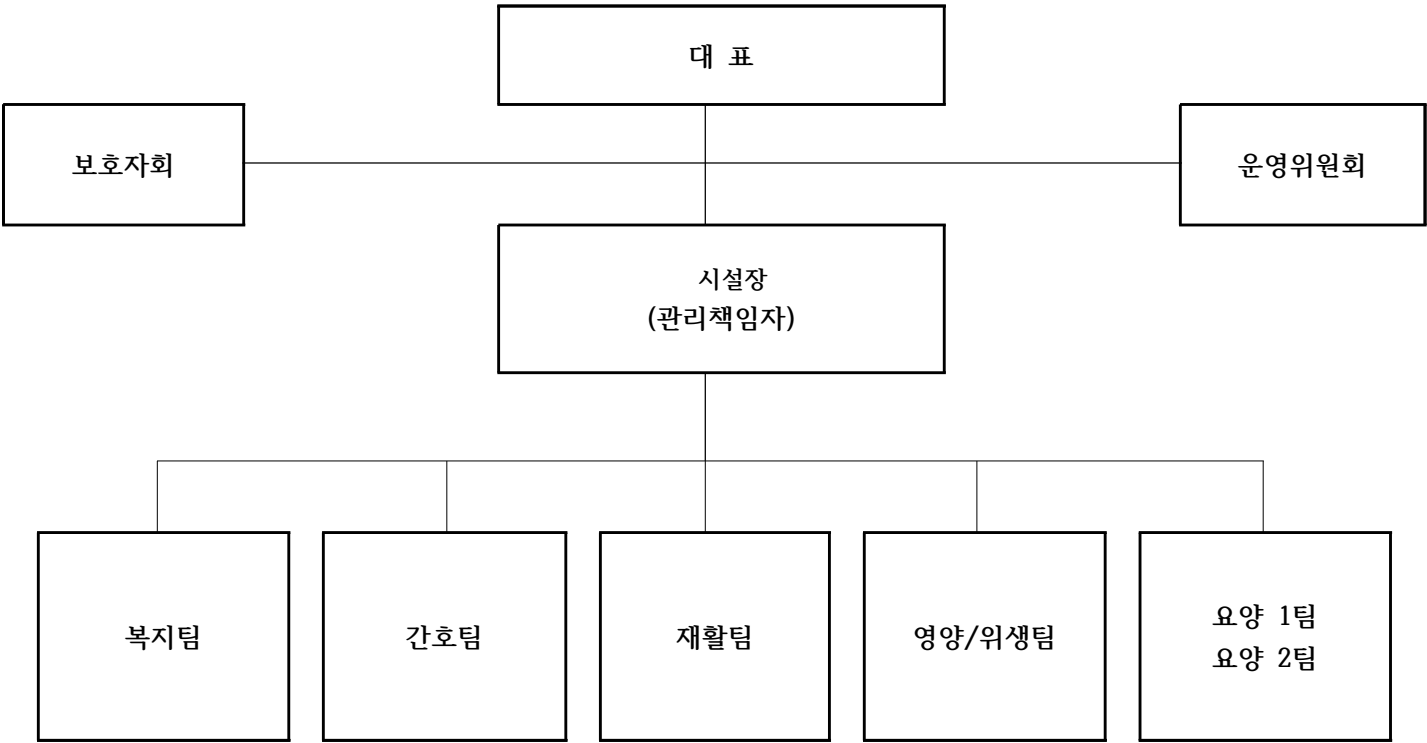
(라) 입소자 본인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하였을 때

제 2장 종사자 근무체계

1. 직원현황

구 분	직 원 현 황										주·야간, 공·휴일 근무인력		
	총인원	시설장	사회 복지사	사무원	간호 조무사	작업 치료사	요양 보호사	영양사	조리원	위생원	주 간	야 간	공휴일
인 력	38	1	3	0	3	1	25	1	3	1	12	5	8

2. 조직도



제 3장 제공하는 급여

1. 사업분류

사업분류		사업대상	사업목표
기관운영	회계업무 (복지)	시설 종사자	- 합리적인 회계를 통해서 투명한 자금을 운영 관리 한다.
	행정업무 (복지)		- 정기적인 문서관리를 통해 기록의 누락을 방지 한다. - 체계적인 사업 관리를 통해 수립한 사업을 100% 실행한다. - 정기적인 시설안전 점검을 통해 안전사고를 예방 한다.
급여제공	신체활동지원 (요양)	입소 어르신	- 신체활동 도움을 통한 일상생활로 잔존기능 유지하여 스스로 어려운 개인 위생관리 및 식사 도움 신변처리 도움 제공하여 일상생활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한다.
	인지관리 정서지원 (요양)		- 입소 어르신의 고립감을 해소하고, 자존감을 향상할 수 있도록 한다.
	건강관리 (간호)		- 정확한 투약관리와 정기적인 건강관리를 통해 어르신의 건강을 관리 한다. - 응급상황에 대한 신속한 대처한다.
	간호처치 (간호)		- 상처(욕창) 부위 처치 및 배설 배뇨 간호 구강 관리 등으로 건강한 생활 유지할 수 있도록 한다.
	영양관리 (영양 위생)		- 어르신의 식이별 식단을 제공하여 영양상태를 유지한다.
	기능회복 지원 (복지, 재활)		- 어르신의 재활 및 건강을 증진 한다. - 어르신의 신체 인지 상태에 따른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현 인지 신체 상태 유지 및 저하를 늦출 수 있도록 한다.

2. 프로그램 분류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인지 프로그램 (브레인 톡톡)	글꽃서당	한글교실, 영어교실 등
	두뇌개발	교구활동, 달력제작, 학습지, 빙고게임 등
	마음건강	마음 스토리텔링 등
	통합예술	모자이크, 수공예, 음악교실, 종이접기, 찰흙공예 등
	회상활동	도란도란 담소, 오늘의 속담, 특별한날/절기 등
여가 프로그램 (아모르 팡팡)	문화활동	신나는 팔도유람, 악기연주, 즐거운 노래방, 추억동화
	사회적응	가족편지 쓰기, 모의 시장, 세상뉴스 전하기, 영화 감상
	신체건강	리듬 규칙 박수, 사물 옮기기, 신체활동게임, 전통놀이
	원예활동	꽃꽂이 등
	힐링활동	마사지, 네일, 마스크팩, 음악감상 등
가족(지역 사회) 연계 프로그램	가족(지역사회) 참여	문화 행사 참여, 지역행사 참여 등
	가족(지역사회) 개최	어버이날 행사, 성탄절 행사
	가족 지지	생신잔치
	지역사회 자원 연계	봉사단 공연 초빙 등
특별 프로그램	없음	비정형 프로그램 등

3. 프로그램 제공과정

단계	내용		비고
1단계 - 기초 평가 (최초등록 시)	대 상 어르신	건강상태 평가 - 신체기능 - 간호처치 - 신체기능 - 재활 - 행동변화 - 우울 등	- 장기요양인정조사표 항목을 기본으로 하고, 어르신의 상태에 따라 가감할 수 있음 - 프로그램 제공의 목표 및 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 자료임
		기록형태 - 장기요양기록지 - 욕구사정기록지 - 낙상위험측정 기록지 - 욕창위험평가지 - 신체기능평가지	
	가 족	수발부담	
		기록형태 - 장기요양급여제공계획서	
2단계 - 목표 및 계획수립	인지 신체 기능에 따른 그룹 분류		- 기초평가자료를 근거로 각 영역에서 달성하고자 하는 프로그램 목표를 세우고 - 목표달성을 위한 프로그램 제공계획 수립
	기록형태 - 프로그램 제공계획서		
3단계 - 프로그램 제공	- 기능훈련 - 인지 - 여가 - 지역사회		- 프로그램 제공계획에 따라 프로그램을 제공함 - 프로그램 운영자의 숙련도와 적극성이 요구됨.
	기록형태 - 프로그램 제공기록지		
4단계 - 상태평가 (지속 모니터링)	기초평가와 동일		- 문제의 심각성에 따라 주기를 정하여 계속모니터링 - 기초평가결과와 비교
5단계 - 평가결과	반기별 프로그램 모니터링 평가		
6단계 - 평가결과 반영	4단계 상태 지속 모니터링 및 수급자 , 보호자 의견수렴을 진행하여 다음 프로그램 계획에 반영		

제 4장 비급여 대상 및 항목별 비용

30일준

구 분		1등급	2등급	3,4,5등급	비급여
기 준 수 가		2,713,500 (일/90,450)	2,517,300 (일/83,910)	2,377,200 (일/79,240)	외래진료비 : 별도 뉴케어: 별도
본 인 부 담	일반(20%)	542,700	503,460	475,440	
	의료급여(12%)	325,620	302,076	285,264	
	의료급여(8%)	217,080	201,384	190,176	
	기초수급(무료)	0	0	0	
비급 여	식재료비	333,000	333,000	333,000	
	2인실 상급료	300,000	300,000	300,000	
본인 부담 총액	일반(20%)	875,700	836,460	808,440	
	의료급여(12%)	658,620	635,076	618,264	
	의료급여(8%)	550,080	534,384	523,176	
	기초수급(무료)	0	0	0	

(노인요양시설에서 배치한 요양보호사 수가 입소자 2.1명당 1명 이상인 경우 적용입니다.)

제 5장 시설의 규모 설비

시설명	세종해밀요양원		
사업장주소	세종시 금남면 성덕영곡길 150, 세종해밀요양원		
시설의 종류	노인요양시설		
대표자	현근성		
시설장	현민영		
시설규모	대지면적		연면적
	1,555,00m ²		1,206.98 m ²
			건폐율(건축면적/대지면적): 29.56% 용적률(연면적/대지면적): 63.90%
	기준 시설	층별	면적(m ²)
		지상 3층	47.88m ²
		지상 2층	261.63m ²
		지상 1층	428.03m ²
	지하 1층	469.44m ²	사무실, 프로그램실, 간호사실, 물리치료실, 상담실, 조리실, 식당, 세탁실, 자원봉사자실
		시설	
		옥상, 휴게실, 창고, 하늘정원	
		침실, 화장실, 목욕실, 요양보호사실, 거실 등	
		침실, 화장실, 목욕실, 거실 등	

외부전경



1층



2층



제 6장 배상책임 보험 가입

보험증권

한화복지시설배상책임보험



한화손해보험



계약 기본사항

증권번호	FA20247735592000	계약일	2024년 05월 03일
계약자	세종해일요양원 한국노인개인선고시설협회 317-82-62647 05718 서울 송파구 송파대로28길 20 *****		
피보험자	세종해일요양원 248-80-01563		
보험기간	2024년 05월 26일 00:00시부터 2025년 05월 26일 00:00시까지		1년 -개월 -일
	이 보험계약에 기재된 증권발생지의 표준서를 기준으로 합니다.		개인정보보호정책(기타)

* 상가시설에 해당지 보험과 시설(노인)에 대한 경우 보험 종류 문제와 발생될 수 있으나 회사를 연락하여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보험료 및 납입내역

보험유형	화폐	보험가입금액	보험료	원화환산보험료
배상책임	WON	600,000,000	5,880,900	KRW 5,880,900
합계	WON	600,000,000	5,880,900	KRW 5,880,900

납입유형	납입회차	납입비율	납입예정일	화폐	보험료	원화환산보험료
일사납	1회차	100%	2024-05-26	WON	5,880,900	KRW 5,880,900

* 보험 사고 발생 시 접수처: 한화손해보험 고객상담센터(1566-8000)

* 보험사기(고의사고, 허위사고, 피해과장, 사고 후 보험가입 등)는 형법상 금지된 범죄입니다.

고객상담센터 (상담 및 문의) 1566-8000 영업부(경) 전략영업부 02-1566-8000
영업담당자 보험대리점: 한국보험금융(주) 김종희 010-3892-227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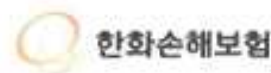
한화손해보험

대표이사 나 채 범



보험증권

한화복지시설배상책임보험



계약자 세종해일요양원 한국노인재난고사발원회 증권번호 FA20247735592000(0000) 설계번호 FA240503729205

1.소재지 국내소재 (30084) 세종 금남면 성덕영곡길 150
물건명 세종해일요양원

요양보호시설전문배상책임보험

1.목적물명 : 세종해일요양원

▶ 목적물사항

산출기준 정원수(49.00) 명 / 현원수(49.00) 명
담보기준 배상청구기준 통지기간연장담보 60일
소급담보일자 2021-05-26 담보지역 대한민국

▶ 담보내역

담보명	보상한도액	공제금액
요양보호시설전문배상책임담보	대인대물일괄 총보상한도액 WON 100,000,000	0
	대인대물일괄 1청구당 WON 100,000,000	500,000

시설소유(관리)자배상책임

2.목적물명 : 세종해일요양원

▶ 목적물사항

목적물내역 세종해일요양원
산출기준 현원수(49.00) 명
시설관리전문업체여부 피보험자구분 점유자(임차인)
담보기준 통지기간연장담보 0일
소급담보일자 담보지역

▶ 담보내역

담보명	보상한도액	공제금액
대인	1인당 WON 100,000,000	0
시설소유(관리)자 배상책임 특별약관	대인 1사고당 WON 500,000,000	100,000
	대물 1사고당 WON 10,000,000	100,000

보험약관 및 조건

한화복지시설배상책임보험 보험약관
요양보호시설전문배상책임담보
시설소유(관리)자 배상책임 특별약관
날짜인식오류 부당보 특별약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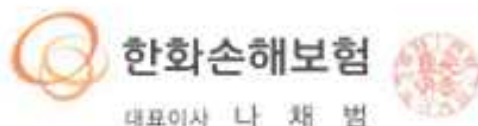
기타사항

▶ 개별위험

-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지의 일소시설 정원운영에 관한 특례적용
- 보험 담보범위 중 요양보호행위의 주체는 요양보호사, 간호사(간호조무사) 사회복지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가 포함
- 전문인 인원수 제한없음

* 보험 사고 발생 시 접수처 : 한화손해보험 고객센터(1566-8000)

고객상담센터(상담 및 문의) 1566-8000 영업부(점) 전략영업부 02-1566-8000
영업담당자 보험대리점 : 한국보험금융(주) 김준희 010-3892-2279



대표이사 나 채 별

보험증권

한화복지시설배상책임보험



한화손해보험

계약자

세종특별자치시 한국노인재활선교사회

증권번호

FA20247735592000(0000)

설계번호

FA240503729205

제1차항

▶ 개별위당

예금자보호
제도

이 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른 예금보험공사의 보호대상 상품입니다.

모든 보호대상 금융상품의 해지환급금, 만기환급금, 사고보합금, 기타지급금 등을 합산하여 1인당 *최고 5천 원*까지 보호합니다.

다만, 계약자 및 보험료 납입주체가 법인인 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하지 않습니다.

* 보험 사고 발생 시 접수처 : 한화손해보험 고객센터(1566-8000)

고객상담센터 (상담 및 문의) 1566-8000 영업부(점) 전학영업부 02-1566-8000

영업담당자 보험대리점 : 한국보험금융(주) 김중희 010-3892-2279



한화손해보험

대표이사 나 채 범





보험증권

무배당 삼성화재 재물보험 비즈앤안전 파트너(2106.3)

계약자	현근성 (760411-1*****)	계약번호	52118541890000
	(주택) 35322 대전 서구 도산로 161 (변동,포도힐6차)		
보험기간	2021.06.24 ~ 2031.06.24 (10년)	청약일	2021.06.24
		계약형태	적용안함
1회 보험료	141,000원(월납)[기본:102,360원 + 특약:37,418원 + 적립:1,222원]		

건물(1/2)

구분	내용
상품판매형	비례보상형
피보험자(보험대상자)	현근성 (760411-1*****)
소재지	30084 세종 금남면 성덕영곡길 150 노유자시설 (영곡리)
목적용업종	노인복지시설(노인복지시설,노 인복지회관, 경로당등)
요율적용업종	노인복지시설(노인복지시설,노 인복지회관, 경로당등)
수용장소	중권상 표기된 건물내 본산수용 합 지하1층 ~ 지상3층 사용
피보험자(보험대상자)	(주택) 35322 대전 서구 도산 로 161 (변동,포도힐6차)
주소	
건물구조급수	1급
건물구조	콘크리트조/슬라브층/콘크리트 외벽
가입면적 (㎡)	1,381
층수(지상)	3
층수(지하)	1
화재(폭발포함)배상책 임부담보특약	선택 안함
화재손해부담보특약	선택 안함
특수건물여부	선택 안함
다중이용업소 의무가입 대상여부	선택 안함
임대임차인구분코드	임대인아님
복합구조건물대상여부	선택 안함
도시가스사용구분	액화석유가스
가스시설지하소재여부	선택 안함
저장시설방호벽유무	선택 안함

보장사항

구분	납입/보험기간	가입금액(원)	보험료(원)
[기본]			
화재(폭발포함) 배상책임 II (대물 1 사고당)	10년납 10년만기	1,000,000,000	4,626
화재(폭발포함) 배상책임 II (사망및 후유장해 1인당)		150,000,000	
화재(폭발포함) 배상책임 II (부상 1 인당)		30,000,000	
화재손해(건물(비례))(영위업종적용)	10년납 10년만기	1,500,000,000	81,000
화재손해(시설및집기비품(비례))(영 위업종적용)	10년납 10년만기	200,000,000	10,800
[특약]			
붕괴·침강 및 사태손해(비례)(영위업 종적용)	10년납 10년만기	1,700,000,000	22,100
전기위험(영위업종적용)	10년납 10년만기	150,000,000	13,350
[공제]자기부담금(전기위험(영위업 종적용))		50,000	
가스사고 배상책임(대인)(사망 1인 당)	10년납 10년만기	80,000,000	1,609
가스사고 배상책임(대인)(부상 1인 당)		15,000,000	
가스사고 배상책임(대물)(1사고당)	10년납 10년만기	300,000,000	359

우리회사는 보험계약자와 해당 보험약관에 의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그 증거로서 이 보험증권을 드립니다.

이 보험증권은 공주에서 발급하였습니다.

삼성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74길 14
www.samsungfire.com

대표이사 장 홍 원



삼성화재

내연인국경보
인정제 - 50년
지속가능경영
표준
2018년 2401 7호

공주지점 김근영

Tel : 041-852-5850 / 010-4936-3200 협회등록번호 : 20201220001940

E-mail : geunyeongkim@samsungfire.com

발행일 : 2023-07-11 10:43:50

[페이지 1 / 7]

◆ 장기요양 기관 정보 ◆

- ▶ 기관명 : 세종해밀요양원
- ▶ 장기요양기관기호 : 1-3611000150
- ▶ 급여종류 : 노인요양시설 / 지정일자 2021-05-20
- ▶ 전화번호 : 044) 866-8660 / 팩스 044) 865-8100
- ▶ 홈페이지주소 : https://blog.naver.com/haemil_8660
- ▶ 주소 : 세종시 금남면 성덕영곡길 150, 세종해밀요양원